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2021. 11



kapi 한국미래정책연구원

Contents_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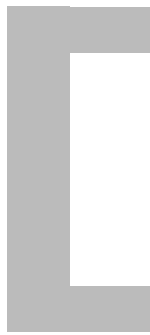
I .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개요	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3
1) 과업내용	3
2) 세부 과업 내용	4
II . 용진군 환경 분석	5
1. 용진군 일반현황	7
1) 지정학적 여건	7
2) 면적	7
3) 인구 현황	8
2. 용진군 교육환경 및 현황	10
1) 교육시설 현황	10
3. 용진군 예산 현황	11
1) 최근 5년 예산액 추이	11
2) 2020년 세입예산 및 비중	11
3) 2020년 세출예산 비중	12
4) 지방세, 세외수입, 소속공무원 인건비 현황	13

Contents_목차

Ⅲ. 지방교육재정 구조 및 현황	15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현황	17
1)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17
2) 자원조달 구조	17
2. 세입·세출 현황	25
1) 지방교육재정 규모	25
2) 지방교육 세입예산 구조	26
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교육재정 부담 법적 구조 및 현황 ...	27
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7
2) 교육경비보조금	29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 현황	31
1) 지방교육지원 예산내역	31
2)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38
5.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문제점	41
1)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자립성) 부족	41
2) 지방교육재정의 경기 민감성	41
3) 일반자치(일반재정)와 교육자치(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43
4)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43
5) 기타 문제점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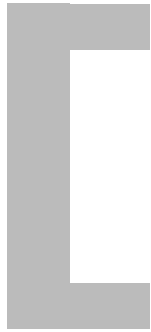
C Contents_목차

IV. 교육경비 실태 및 사례 분석	47
1.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49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실태	49
2)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50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례	56
1) 광역자치단체 사례	56
2) 기초자치단체 사례	59
3.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분석	66
1)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66
4. 자체재원 지원 사례 분석	68
1) 강릉시·영월군·평택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8
2) 교육재정 지원 관련 법령 분석	68
V. 옹진군 교육경비 지원 방안 마련	71
1.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73
2.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75
3.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의 활용	76
1) 비법정전입금 개요	76
2) 비법정전입금 활용 근거 및 내용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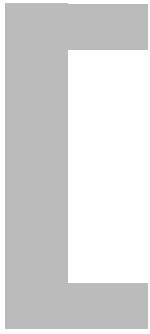
표목차

표 2-1	옹진군 위치	7
표 2-2	해안선 및 도서현황	7
표 2-3	면별 면적현황	7
표 2-4	옹진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2013년~2019년)	8
표 2-5	옹진군 면별 인구 및 세대수(내국인 기준)	8
표 2-6	옹진군 연령별 인구(5세 계급별)	9
표 2-7	옹진군 학교 및 학생 현황	10
표 2-8	옹진군 최근 5개년 학생수 추이	10
표 2-9	옹진군 2020년 세입예산 및 비중	11
표 2-10	옹진군 2020년 세출예산 및 비중	12
표 2-11	옹진군 지방세, 세외수입, 인건비 추이	13
표 3-1	지방교육재정 변동 추이	25
표 3-2	지방교육 세입예산 구성	26
표 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 비중	26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27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근거(비법정이전수입)	28
표 3-6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전출 근거	30
표 3-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31
표 3-8	시도별 교육지원 예산 비중	32
표 3-9	시도별 교육지원 예산 비중	33
표 3-10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시도별 교육지원 예산 비중	35
표 3-11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자치단체 유형별 점유 비중	36
표 3-12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시·도별 비중 추이	37
표 3-13	교육경비보조금의 시·도별 세부내역	38
표 3-14	교육경비보조금의 시·도별, 항목별 세부내역	39
표 3-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교육분야 투자계획의 연도별 변화	42
표 4-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여부	49
표 4-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유형별)	50
표 4-3	2010년과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비교(유형별)	51
표 4-4	시·도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51
표 4-5	광역·기초자치단체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52
표 4-6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53



표목차

표 4-7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최근 3년 교육경비 보조금 비중 규모 ...	53
표 4-8 인천광역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 ...	54
표 4-9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2018~2020년) ...	55
표 4-10 서울특별시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 추진내용 ...	56
표 4-11 양천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58
표 4-1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	58
표 4-13 양천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60
표 4-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	61
표 4-15 울주군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62
표 4-1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	63
표 4-17 동대문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64
표 4-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	64
표 4-19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	66
표 4-20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	67
표 4-21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지자체 ...	68
표 4-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내용) ...	69
표 5-1 비법정전입금 유형별 사업내용 ...	77



그림목차

■ 그림 3-1	웅진군 최근 5년(2016~2020년) 예산액 추이	11
■ 그림 3-2	웅진군 2020년 세입예산 항목별 비중	12
■ 그림 2-3	웅진군 2020년 세출예산 항목별 비중	13
■ 그림 3-1	지방교육재정의 자원구조	18

I .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I



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일반적으로 도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이 중요하고, 양호한 교육환경 기반구축과 조성이 지역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 옹진군도 지역발전에 있어서 양호한 교육환경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옹진군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미지원 교육경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수범사례 연구를 통해 옹진군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현행 교육경비 지원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내용

- 교육환경에 대한 분석
- 교육경비 지원 근거 분석
- 교육경비 지원 현황 분석
- 교육경비 지원 사례 분석
- 교육경비 지원 규정 분석
- 교육경비 지원 방안 마련

2) 세부 과업 내용

- 본 과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환경에 대한 분석, 교육경비 지원 근거 분석, 교육경비 지원 현황 분석, 교육경비 지원 사례 분석, 교육경비 지원 규정 분석, 용진군 교육경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과업	세부내용
교육환경에 대한 분석	• 용진군의 교육 여건 및 현황 분석
교육경비 지원 근거 분석	• 교육경비 제도의 도입 및 변화에 관한 분석 • 교육경비 제도의 목적과 운용에 대한 분석 • 교육경비 제도의 법적 구조에 대한 분석
교육경비 지원 현황 분석	•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현황 분석 •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현황 분석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상세 분석
교육경비 지원 사례 분석	• 미지원 자치단체 현황 분석 • 미지원 자치단체 사유 분석
교육경비 지원 규정 분석	• 교육경비 지원규정 개정 연구
용진군 교육경비 지원 방안 마련	• 보조사업을 통한 학생 지원 방안 연구

II. 용진군 환경 분석

1. 용진군 일반현황
2. 용진군 교육환경 및 현황
3. 용진군 예산 현황



II



1. 용진군 일반현황

1) 지정학적 여건

- 용진군은 한반도 중부 서단에 위치하며 인천 및 경기도 서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섬으로만 구성된 지자체임
- 동쪽으로 경기도 안산시, 남쪽으로 충남 당진, 태안에 접하며 북쪽으로는 황해도와 접하는 북방접경지대를 형성함

표 2-1 용진군 위치

군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용현동 627-608)	동단	영흥면 선재리(광도)	동경 126° 32' 18"	동서간 188.6km
	서단	백령면 연화리	동경 124° 36' 37"	
	남단	덕적면 목덕도	북위 36° 55' 25"	남북간 117.6km
	북단	백령면 연화리	북위 38° 58' 45"	

2) 면적

- 용진은 도서로 이루어진 군으로 유인도 25개와 무인도 7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71.9km²임

표 2-2 해안선 및 도서현황

해안선(km)			도서현황			
육지부	도서부	도서(개)	면적(km ²)		면적(km ²)	
			유인도	무인도		
517.6	-	517.6	100	25	75	171.9

- 면별 면적을 비교해보면 백령면이 51.1km²(29.7%)로 가장 넓고 연평면이 7.3km²(4.2%)로 가장 협소함

표 2-3 면별 면적현황

(단위 : km², %)

용진군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171.9 (100.0)	17.7 (10.3)	7.3 (4.2)	51.1 (29.7)	15.6 (9.1)	36.5 (21.3)	17.7 (10.3)	26.0 (15.2)

3) 인구 현황

(1) 인구구성 및 변화

- 용진군의 인구는 2019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791명으로 집계됨
 - 남성은 11,843명, 여성은 8,948명(남녀 비율 1.3:1)으로 전국(남녀 비율 1:1)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용진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2013년~2019년)

(단위 : 세대수,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대수		11,105	11,083	11,252	11,622	11,888	11,746	11,689
인구	남	11,762	11,689	11,999	12,276	12,351	12,064	11,843
	여	9,064	9,169	9,144	9,246	9,390	9,163	8,948
	합계	20,826	20,858	21,143	21,522	21,741	21,227	20,791

- 면별 인구 현황(내국인 기준)을 살펴보면, 영흥면의 인구가 6,267명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약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월면의 인구는 1,306명으로 7개 면 중 가장 적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24.9%로 집계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표 2-5 용진군 면별 인구 및 세대수(내국인 기준)

(단위 : 세대수, 명)

구분	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화 비율
	남	여	계				
북도	1,157	1,021	2,178	1,151	1.89	696	32.0%
연평	1,328	784	2,112	1,375	1.54	322	15.2%
백령	3,123	2,158	5,281	3,004	1.76	1,017	19.3%
대청	881	618	1,499	895	1.67	408	27.2%
덕적	1,043	880	1,923	1,160	1.66	731	38.0%
자월	673	633	1,306	744	1.76	458	35.1%
영흥	3,473	2,794	6,267	3,360	1.87	1,493	23.8%
합계	11,678	8,888	20,566	11,689	1.76	5,125	24.9%



- 5세 계급별 인구 분포에서는 5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66%를 상회하고 있어 전국(55.6%) 대비 약 10%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령인구를 비롯하여 생산가능연령대 인구가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응진군 연령별 인구(5세 계급별)

(단위 : 명, %)

구분	응진군		전국(B)	차이 (A-B)
	인구	구성비(A)		
합계	20,566	100.00	100.00	0
0-4세	478	2.32	3.56	-1.24
5-9세	546	2.65	4.48	-1.83
10-14세	515	2.50	4.44	-1.94
15-19세	660	3.21	5.13	-1.92
20-24세	1,402	6.82	6.40	0.42
25-29세	1,348	6.55	6.73	-0.18
30-34세	981	4.77	6.09	-1.32
35-39세	1,051	5.11	7.55	-2.44
40-44세	1,167	5.67	7.49	-1.82
45-49세	1,338	6.51	8.68	-2.17
50-54세	1,563	7.60	8.41	-0.81
55-59세	2,179	10.60	8.31	2.29
60-64세	2,213	10.76	7.26	3.5
65-69세	1,504	7.31	4.91	2.4
70-74세	1,315	6.39	3.80	2.59
75-79세	956	4.65	3.13	1.52
80세 이상	1,350	6.56	3.64	2.92

2. 웅진군 교육환경 및 현황

1) 교육시설 현황

- 2020년 말 기준으로 웅진군의 학교는 총 26개교가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14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약5명 수준임

표 2-7 웅진군 학교 및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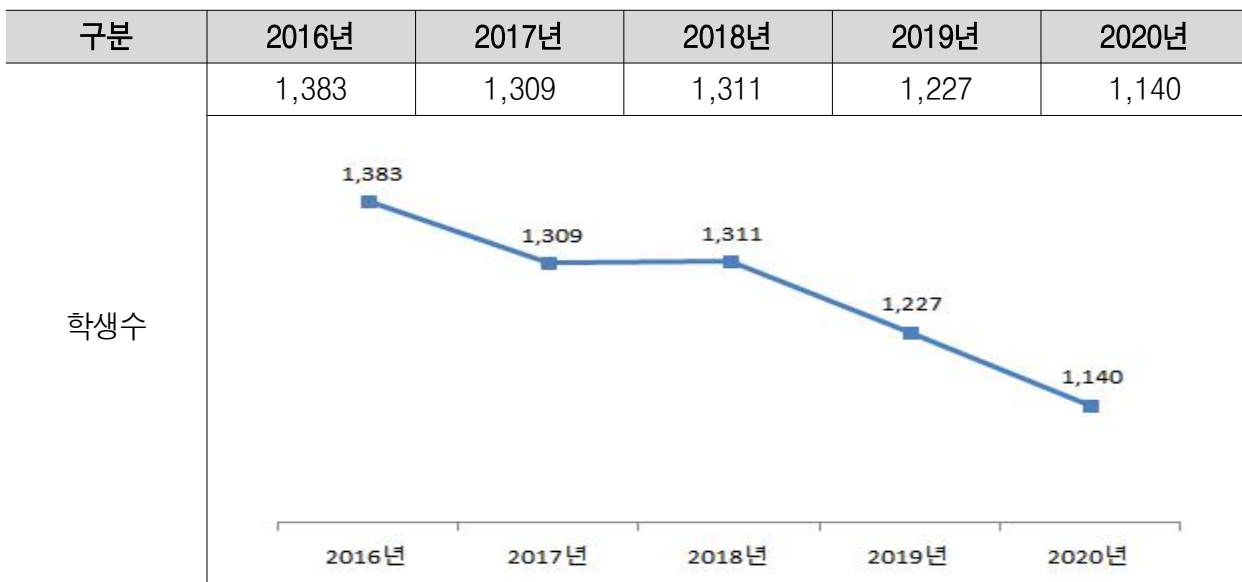
(단위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교 분교수	학생수	교원	교원1인당 학생수
합계	26	6	1,140	227	5.0
유치원	10	-	91	9	10.1
초등학교	6	6	555	84	6.6
중학교	5	-	253	50	5.1
고등학교	5	-	241	84	2.9

- 웅진군의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7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8 웅진군 최근 5개년 학생수 추이

(단위 : 명)





3. 용진군 예산 현황

1) 최근 5년 예산액 추이

- 용진군의 최근 5년간 예산액 추이 분석 결과, 2020년 용진군의 총 예산액은 약 3,246억원으로 2,797억원이었던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3.8%가 증가하고 있다

■ 그림 3-1 용진군 최근 5년(2016~2020년) 예산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2) 2020년 세입예산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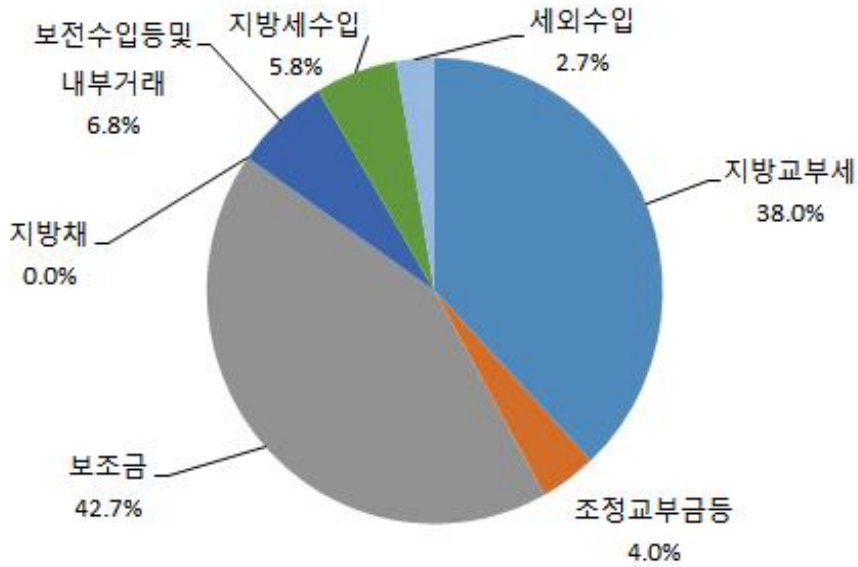
- 용진군의 2020년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이 1,386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32,468억원 중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교부세가 1,233억원 38%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 표 2-9 용진군 2020년 세입예산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비중	금액
지방교부세	38.0%	123,331
조정교부금등	4.0%	13,015
보조금	42.7%	138,585
지방채	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	22,037
지방세수입	5.8%	18,889
세외수입	2.7%	8,828
합계	100.0%	324,684

그림 3-2 옹진군 2020년 세입예산 항목별 비중



3) 2020년 세출예산 비중

- 옹진군의 2020년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16.0% > 사회복지 15.0% > 교통 및물류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교육 분야의 세출예산이 0.0%로 나타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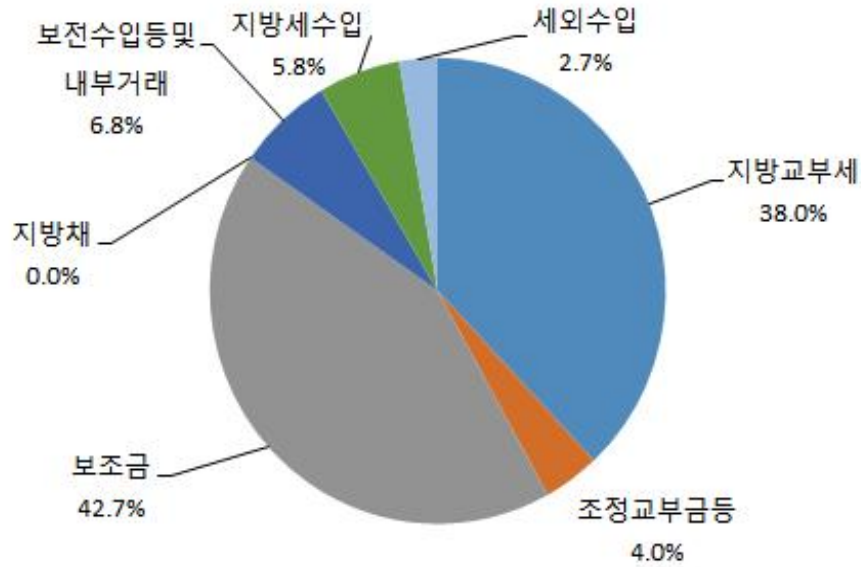
표 2-10 옹진군 2020년 세출예산 및 비중

(단위 :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사회복지	15.0%	기타	16.0%
보건	2.0%	일반공공행정	8.0%
농림해양수산	19.0%	공공질서및안전	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	교육	0.0%
교통및물류	12.0%	문화및관광	3.0%
국토및지역개발	11.0%	환경	7.0%
예비비	3.0%	합계	100.0%



■ 그림 2-3 옹진군 2020년 세출예산 항목별 비중



4) 지방세, 세외수입, 소속공무원 인건비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3개년 동안의 옹진군의 관련 예산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분석결과, 최근 3년 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1 옹진군 지방세, 세외수입, 인건비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방세	14,360	18,876	19,806
세외수입	7,006	8,686	7,884
합계(A)	21,366	27,562	27,690
인건비(B)	54,166	55,996	60,835
차액(A-B)	-32,800	-28,433	-33,145

III. 지방교육재정 구조 및 현황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현황
2. 세입 · 세출 현황
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교육재정 부담 법적 구조 및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 현황
5.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문제점

III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현황

1)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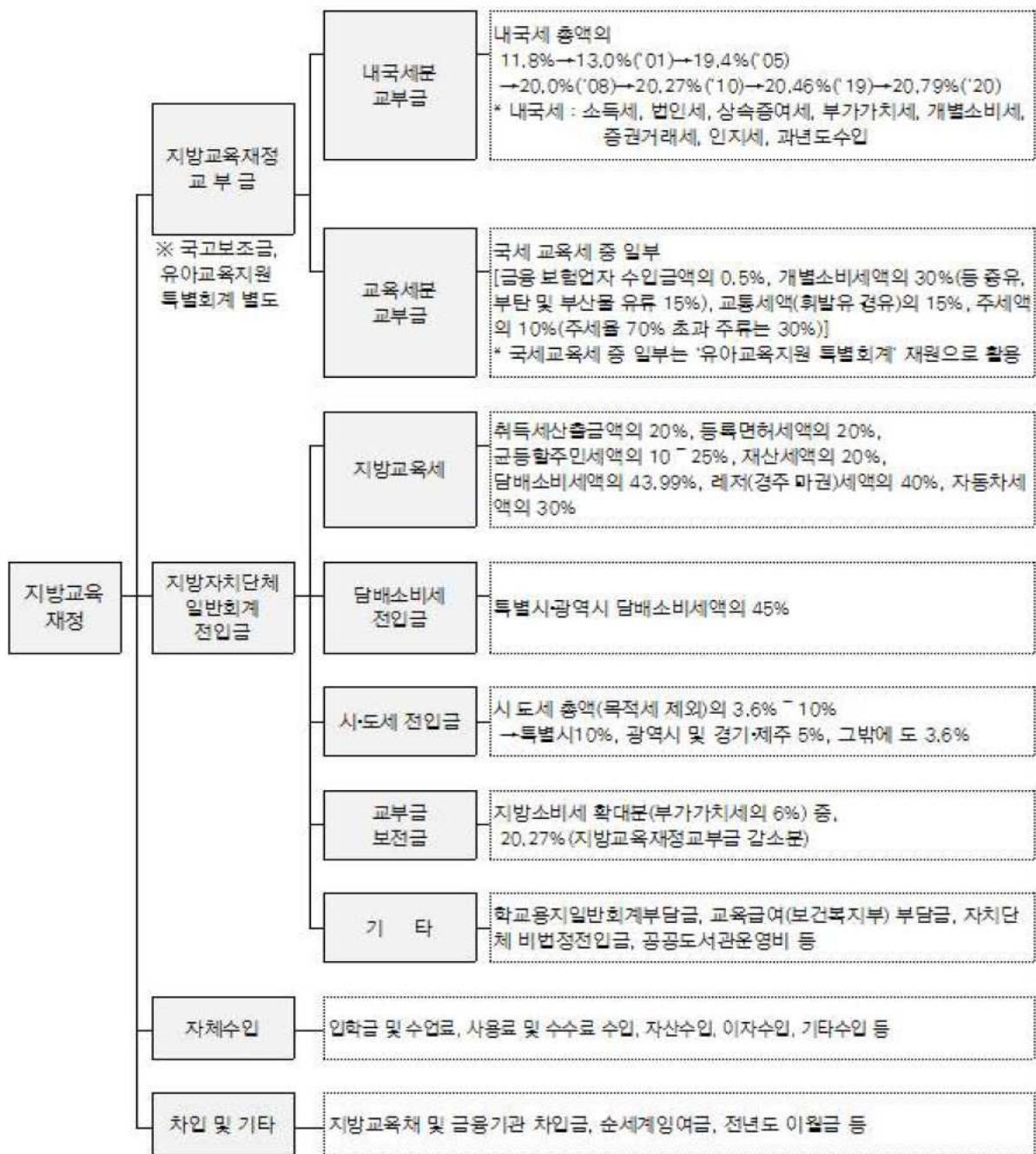
- 재정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 교육재정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과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 있다,
-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관장하며, ‘교육비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 특별회계라는 말은 회계적인 특성상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특별한 설치목적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회계를 의미한다.
 - 즉,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회계라고 볼 수 있다.

2) 재원조달 구조

-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하여 일반재정과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의무교육경비의 부담, 교육비의 보조,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첫째,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동법 제37조).
 - 둘째,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하며, 국가의 교육비

- 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39조).
- 셋째,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이때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동법 제40조).
 - 이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지방교육재정의 자원조달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 그림 3-1 지방교육재정의 자원구조





- 즉,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재정(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 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교육경비보조금 등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차입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중앙정부 재정지원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59년 도입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4년 도입된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치단체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자체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국가에 의한 교부금 교부 및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 2000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며, 보통교부금은 다시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구성된다.
- 재원은 내국세의 11.8%와 봉급교부금이며, 봉급교부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보급 전액과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된다. 2000년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 조정되었고,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도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즉,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학급담당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 보건교사수당(2002년 추가) 등을 포함하게 된다.
- 2004년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원확보 및 지원구조의 단순화·투명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0%에서 19.4%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여 교육세

를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였고, 특별교부금의 재원도 보통교부금의 1/11에서 내국세 19.4%의 4/100로 조정하였다. 2004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관련 조항을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19.4%에서 20%로 인상하였고, 이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 20.27%로 인상하였다.

-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내국세 20.27%의 96/100 금액과 교육세 전액으로 조성)과 특별교부금(내국세 20.27%의 4/100 금액으로 조성)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은 자금의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이고, 특별교부금은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이다.

나.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은 1990년 12월 제정된 지방교육양여금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특회계를 제외한 교육세 전액이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었다. 2000년까지는 교육세 전액이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이었으나 2001년 교육세가 지방세분과 국세분으로 이원화되면서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에서 제외된다. 이후 2005년 국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되면서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다.

다. 국고보조금 및 교육환경개선부담금

-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해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교부되는 교부금이다.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교체와 교원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1989년 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교육재정 GNP 5% 확보계획의 일환으로 다시 5년 동안(1996~2000) 한시적으로 재설치되었다가 2001년 폐지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크게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을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며, 전입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원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입금을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한다.

가. 법정전입금

-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다.

① 시·도세 전입금

- 시·도세 전입금은 2000년 시·도세 총액의 2.6%에서 2001년 3.6%로 전입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비의무교원봉급전입금이 합산되면서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지역 3.6%로 다시 확대되었다.

② 지방교육세 전입금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01년 신설되었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2001년에는 교육세가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개편되면서 지방세분 교육세의 세율이 경주마권세의 경우 50%에서 60%로, 담배소비세

분의 경우 40%에서 50%로 인상되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 등록면허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 담배소비세액의 50%, 레저세액의 40%를 재원으로 한다.

③ 담배소비세 전입금

-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특별시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를 전입하도록 되어 있다.

④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을 지원하는 법적 의무경비이다. 동 부담금은 취득세·등록면허세수입, 개발부담금,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기본재원으로 조달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항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제6조(시·도 부담의 경비의 재원) 제1항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

⑤ 비의무교원봉급전입금

- 한편 비의무교원봉급전입금은 2000년까지 서울과 부산이 각각 100%와 50%를



부담해오다가 2001년부터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도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4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

나. 비법정전입금

- 비법정전입금에는 「도서관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원되는 기타 교육지원금 등이 있다.¹⁾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속하는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재정지원제도(교육경비보조금)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교육예산 또는 민간이전과 달리 자치단체가 관내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등 교육현장에 직접 투자하는 재정지원 장치이다.
- 비법정전입금은 법정전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는 예산이다. 법률에 부담 의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정전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시·도는 관할지역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입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은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자치단체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①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③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④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⑥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⑦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조).

1) 교육경비보조금은 비법정전입금의 일종이지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학교회계로 직접 전입되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구분된다.

-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비법정전입금은 재정지원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치적 성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수준 등에 따라 전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 간 전입규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자체자원 조달

- 자체수입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토지사용료,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입 등의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수입,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적립금수입, 각종 잡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라. 차입재정

- 차입재정은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방교육채는 시·도 교육감이 발행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채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구성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기채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이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

마. 주민 및 기관 등 부담금

- 주민 및 기관 등 부담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특별부과금,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



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분담금, 기부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기관부담금 등을 의미한다.

바. 기타

- 기타 재원으로는 이월금이 있다.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2. 세입·세출 현황

1) 지방교육재정 규모

-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17년 약59조원에서 2019년 70.6조원, 2021년 71.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4.75% 증가).

표 3-1 지방교육재정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전수입	547,177	633,318	677,554	712,735	694,749
자체수입	11,537	11,421	11,163	7,610	3,953
지방교육채	19,529	2,897	-	-	-
기타	12,418	13,984	17,241	18,400	12,529
합계	590,661	661,620	705,958	738,745	711,231

2) 지방교육 세입예산 구조

- 2021년 지방교육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3,953억원(0.6%), 이전수입은 69조 4,749억원(97.7%)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수입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55조 9,963억원(78.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은 13조 2,979억원(18.7%)에 이르고 있다. 연도 별로는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이전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2 지방교육 세입예산 구성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전수입	중앙정부	436,326	511,854	551,214	579,948	559,963
	지방자치단체	110,614	120,902	125,792	131,255	132,979
	기타	236	561	547	1,531	1,805
	이전수입 계	547,177	633,318	677,554	712,735	694,749
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9,407	8,639	8,041	4,176	10
	사용료 및 수수료	270	285	273	263	221
	자산수입	378	894	574	431	686
	이자수입	787	705	853	983	594
	기타수입 등	693	895	1,420	1,755	2,440
	자체수입 계	11,537	11,421	11,163	7,610	3,953
지방교육채		19,529	2,897	0	0	0
기타		12,418	13,984	17,241	18,400	12,529
합계		590,662	661,622	705,959	738,746	711,231

- 지방교육재정의 자원조달구조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73.9%, 지방자치단체 18.7%이며, 연도별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원부담이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부담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2017~2021년)로는 중앙정부가 73.9%~94.8%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18.7%~2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 비중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앙정부	73.9%	86.7%	93.3%	98.2%	94.8%
지방자치단체	18.7%	20.5%	21.3%	22.2%	22.5%



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교육재정 부담 법적 구조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급식법」 및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학에 진흥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부담 방식은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정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과 비법정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학교급식법 제9조,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 그리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학교급식법 제9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는 크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법정이전수입과 단위학교로 전출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구분됨

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교육지원비로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음
 -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령에 전입금의 규모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의무부담행위 및 재량행위)에 있음
 -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을 법정이전수입이라고 하며,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임의 조항, "할 수 있다")에 의한 전입금을 비법정이전수입이라고 함
- 아래 [표 3-2]에서와 같이 법정이전수입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 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있음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구분	주요내용
법정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

구분	주요내용
	<p>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36에 해당하는 금액
	<p>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p>

- 비법정이전수입에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학교급식법」 제9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 내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의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이 있음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근거(비법정이전수입)

구분	주요내용
비법정 전입금	<p>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p> <p>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p>
	<p>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p> <p>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p>



2) 교육경비보조금

- 교육경비보조금은 비법정이전수입과 유사함
 - 다만 비법정이전수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차이가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는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음
 - 199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민선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학교급식시설지원을 결정하였고, 당시 내무부는 지방재정대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정을 요구함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하여 학교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유성구는 이에 근거하여 관내 9개 초등학교에 약 6억원을 지원함
 - 내무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1996년 인천 남동구 의회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동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였다.
 - 학교급식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된다(대법원 1996.11.29 선고 96추84 판결).
- 이 두 사건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요구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초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규정을 폐지하였다.

-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2007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 즉,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법률 제8148호, 2006.12.30. 공포, 2007.1.1 시행)되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로 확대되었다.
- 이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되었다.
-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줄이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였다.

표 3-6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전출 근거

법률	개정전	개정후	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⑥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	법률 제8148호, 2006.12.30. 공포, 2007.1.1 시행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일종의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연계확대전입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제도로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이끌어 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교육투자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투자의 불균형을 유도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총량규모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보조금의 격차는 불가피



한 것이었다.

표 3-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역자치단체 각종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 보조금의 집행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 :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2. 사립학교 :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 현황

1) 지방교육지원 예산내역

(1) 지방교육예산 지원규모

- 지방교육지원 예산의 구성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도 전체 교육지원 예산 중 지방교육세가 50.0%로 가장 높은 점유 비율을 보이고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이 18.9%로 이들 2개 항목이 전체의 68.9%를 차지한다. 이 외에 학교

급식(13.7%), 교육경비보조(8.3%), 담배소비세 전출금(5.4%), 학교용지부담금(3.6%)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이 큰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일부 시·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학교급식,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41.4%,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34.4%로 이들 2개 항목이 서울시 교육지원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담배소비세 전출금(9.1%), 학교급식(9.2%) 등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53.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학교급식보조(15.6%),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10.9%), 교육경비보조금(10.1%), 학교용지부담금(9.8%)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16.6%, 강원도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8 시도별 교육지원 예산 비중

(단위 : %)

구분	계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담배 소비세 45%	지방 교육세	비법정 부담금	학교 용지 매입비	학교 급식 보조	교육 경비 보조
합계	100.0	18.9	5.4	50.0	0.14	3.6	13.7	8.3
서울	100.0	34.4	9.1	41.4	0.00	0.7	9.2	5.3
부산	100.0	21.1	12.7	52.9	0.00	2.3	5.8	5.1
대구	100.0	23.4	13.7	49.7	0.08	4.2	4.0	4.9
인천	100.0	15.8	11.0	45.8	1.12	1.4	14.2	10.6
광주	100.0	19.3	13.7	46.8	0.00	0.7	17.7	1.8
대전	100.0	17.8	13.8	49.9	0.00	4.0	12.3	2.2
울산	100.0	23.7	11.4	53.0	0.85	2.7	3.6	4.9
세종	100.0	22.9	0.0	44.5	0.00	16.6	12.0	4.0
경기	100.0	10.9	0.0	53.7	0.00	9.8	15.6	10.1
강원	100.0	7.6	0.0	55.5	0.00	0.4	15.9	20.7
충북	100.0	7.9	0.0	53.9	0.00	3.9	28.9	5.4
충남	100.0	6.6	0.0	56.6	0.04	0.8	21.0	15.0
전북	100.0	9.0	0.0	57.5	0.00	2.2	21.8	9.5
전남	100.0	7.0	0.0	46.3	0.39	1.0	27.6	17.7
경북	100.0	9.9	0.0	61.1	0.00	1.9	14.9	12.1
경남	100.0	9.4	0.0	58.5	0.00	2.0	21.6	8.4
제주	100.0	16.1	0.0	58.9	2.10	1.4	11.9	9.6



- 지방교육재정 지원 항목을 법정전입금(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과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법정전입금이 77.9%를 점하고 비법정전입금 13.8%, 교육경비보조금 8.3%로 나타난다.
- 이를 시·도별로 보면,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법정전입금이 모두 80% 이상(인천 제외)을 차지하는 반면 도는 상대적으로 법정전입금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정전입금은 대구 90.9%, 울산 90.7%, 부산 89.1%, 서울 85.5%, 대전 85.5%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전남 54.3%, 강원 63.4%, 충남 64.0%, 충북 65.8%, 전북 68.7%로 70% 미만으로 지역 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특히 대구는 법정전입금 90.9%, 비법정전입금 4.1%, 교육경비보조금 4.9%인 반면 전남은 법정전입금 54.3%, 비법정전입금 28.0%, 교육경비보조금 17.7%로 구성 비중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법정전입금은 75.9%, 비법정전입금 15.5%, 교육경비보조금 8.7%의 구성 비중이며, 지역 간 편차는 교육경비보조금(변이계수 : 0.619)이 법정전입금(0.142)이나 비법정전입금(0.474)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3-9 시도별 교육지원 예산 비중

(단위 : %)

구분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77.9	13.8	8.3
서울	85.5	9.2	5.3
부산	89.1	5.8	5.1
대구	90.9	4.1	4.9
인천	74.1	15.3	10.6
광주	80.5	17.7	1.8
대전	85.5	12.3	2.2
울산	90.7	4.5	4.9
세종	84.0	12.0	4.0
경기	74.3	15.6	10.1
강원	63.4	15.9	20.7
충북	65.8	28.9	5.4
충남	64.0	21.0	15.0
전북	68.7	21.8	9.5
전남	54.3	28.0	17.7
경북	72.9	14.9	12.1

표 3-9 시도별 교육지원 예산 비중(계속)

(단위 : %)

구분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경남	70.0	21.6	8.4
제주	76.4	14.0	9.6
평균	75.9	15.5	8.7
표준편차	10.8	7.3	5.4
변이계수	0.142	0.474	0.619
최대	90.9	28.9	20.7
최소	54.3	4.1	1.8
최대/최소비	1.7	7.0	11.4

(2) 지방교육지원 예산의 시·도별 점유 비중

- 지방교육지원 예산의 시·도별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합계에서는 서울시가 지방교육지원 예산의 27.2%, 경기도가 24.6%로 이들 2개 시·도가 교육지원예산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인천 6.1%, 부산 5.9%, 경남 5.4%로 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세종 0.5%, 제주 1.6%, 울산 2.1%, 광주 2.4%, 충북 2.4%, 전북 2.4% 등으로 나타난다.
- 주요 항목별로 시·도의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에서는 서울이 4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경기도는 14.1%를 점하고 있고 그 외에 부산 6.6%, 대구 5.2%, 인천 5.1% 등이다.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서울이 45.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고 이외에 부산 13.9%, 인천 12.4%, 대구 10.6%, 대전 6.8%, 광주 6.1%, 울산 4.5% 등을 보인다.
- 지방교육세는 경기 26.4%, 서울 22.6%로 이들 2개 시·도가 지방교육세의 49.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남 6.3%, 부산 6.2%, 인천 5.6%, 경북 4.3% 등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가 65.8%로 절대적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이외에 서울 4.9%, 대구 4.8%, 부산 3.7%, 경남 3.0% 등으로 나타난다. 학교급식보조는 경기 28.1%, 서울 18.3%로 이들 2개 시·도가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남 8.5%, 인천 6.3%, 전남 5.8%, 충남 5.7%, 충북 5.1%, 전북 3.9%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 30.0%, 서울 17.4%로 이들 2개 시·도가



47.4%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천 7.8%, 충남 6.7%, 강원 6.2%, 전남 6.1%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지원 예산항목별 지역 간의 편차는 학교 용지부담금(변이계수 : 2.636), 비법정부담금(2.241), 시도세총액 전출금(1.991)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시도별 교육지원 예산 비중

(단위 : %)

구분	계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담배 소비세 45%	지방 교육세	비법정부담금	학교 용지 매입비	학교 급식 보조	교육 경비 보조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27.2	49.5	45.8	22.6	0	4.9	18.3	17.4
부산	5.9	6.6	13.9	6.2	0	3.7	2.5	3.6
대구	4.2	5.2	10.6	4.2	2.5	4.8	1.2	2.5
인천	6.1	5.1	12.4	5.6	49.9	2.3	6.3	7.8
광주	2.4	2.4	6.1	2.2	0	0.5	3.1	0.5
대전	2.7	2.5	6.8	2.7	0	2.9	2.4	0.7
울산	2.1	2.7	4.5	2.3	13.3	1.6	0.6	1.2
세종	0.5	0.6	0.0	0.4	0.0	2.2	0.4	0.2
경기	24.6	14.1	0.0	26.4	0.0	65.8	28.1	30.0
강원	2.5	1.0	0.0	2.8	0.0	0.2	2.9	6.2
충북	2.4	1.0	0.0	2.6	0.0	2.6	5.1	1.6
충남	3.7	1.3	0.0	4.2	1.1	0.8	5.7	6.7
전북	2.4	1.2	0.0	2.8	0.0	1.5	3.9	2.8
전남	2.9	1.1	0.0	2.7	8.2	0.8	5.8	6.1
경북	3.5	1.8	0.0	4.3	0.0	1.8	3.8	5.1
경남	5.4	2.7	0.0	6.3	0.0	3.0	8.5	5.5
제주	1.6	1.4	0.0	1.9	25.0	0.6	1.4	1.9
평균	5.9	5.9	12.5	5.9	5.9	5.9	5.9	5.9
표준편차	7.7	11.7	14.2	7.2	13.2	15.5	7.1	7.5
변이계수	1.308	1.991	1.135	1.224	2.241	2.636	1.204	1.268
최대값	27.2	49.5	45.8	26.4	49.9	65.8	28.1	30.0
최소값	0.5	0.6	4.5	0.4	1.1	0.2	0.4	0.2
최대/최소비	56.4	84.7	10.2	61.4	45.4	266.1	66.1	128.8

- 한편, 자치단체 유형별 교육지원 예산의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특별·광역시 51.0%, 도가 4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특별·광역시(51.0%)의 경우 서울 27.2%, 광역시 23.8%이고 도(49.0%)의 경우 경기도 24.6%, 기타 도 24.4%로 나타난다.
- 교육지원 예산의 각 항목에 대해 자치단체 유형별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은 특별·광역시 74.5%, 도 25.5%로 나타나며, 특별·광역시(74.5%)의 경우 서울 49.5%, 광역시 25.0%이고 도(25.5%)의 경우 경기도 14.1%, 기타 도 11.4%이다.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특별·광역시 100.0%로 도의 부담은 없으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45.8%, 광역시 54.2%의 비중을 보인다. 지방교육세는 특별·광역시 46.1%, 도가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22.6%, 광역시 23.5%이고 도의 경우 경기도 26.4%, 기타 도는 27.5%로 나타난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광역시 22.9%, 도 77.1%의 점유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4.9%, 광역시 18.0%이며, 도의 경우 경기도 65.8%, 기타 도 11.3%이다. 학교급식보조는 특별·광역시의 비중이 34.8%이고 도는 65.2%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18.3%, 광역시 16.5%이고 도의 경우 경기 28.1%, 기타 도 37.1%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특별·광역시 34.0%, 도 66.0%의 점유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17.4%, 광역시 16.6%이고 도의 경우 경기도 30.0%, 기타 도 36.0%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1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자치단체 유형별 점유 비중

(단위 : %)

구분	계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담배 소비세 45%	지방 교육세	비법정 부담금	학교 용지 매입비	학교 급식 보조	교육 경비 보조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특별·광역시	51.0	74.5	100.0	46.1	65.7	22.9	34.8	34.0
서울	27.2	49.5	45.8	22.6	0.0	4.9	18.3	17.4
광역시	23.8	25.0	54.2	23.5	65.7	18.0	16.5	16.6
도	49.0	25.5	0.0	53.9	34.3	77.1	65.2	66.0
경기도	24.6	14.1	0.0	26.4	0.0	65.8	28.1	30.0
기타	24.4	11.4	0.0	27.5	34.3	11.3	37.1	36.0



- 연도별로 교육지원 예산의 시도별 비중을 분석하면, 특별·광역시는 2015년 54.6%에서 2016년 51.1%로 낮아졌으나 2017년에 다시 54.4%로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 51.0%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2015년 45.4%에서 2016년 48.9%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45.6%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1년 49.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각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울산시는 계속하여 교육지원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에 24.6%로 전년도(27.2%)에 비해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시·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연도 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경남도는 최근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시는 연도 간에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교육지원 예산의 시·도별 비중의 편차를 보면, 2015년(변이계수: 1.419)에 가장 크고 2018년(1.363), 2020년(1.376), 2021년(1.308)에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시·도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특별·광역시	54.6	51.1	54.4	53.1	51.5	49.5	51.0
서울	31.5	30.0	30.8	30.1	28.1	26.9	27.2
부산	6.0	5.6	6.4	5.8	5.4	5.8	5.9
대구	4.2	3.7	3.9	3.8	3.6	4.0	4.2
인천	5.3	5.2	6.4	6.6	7.4	5.4	6.1
광주	2.5	1.9	2.2	2.4	2.4	2.4	2.4
대전	2.7	2.3	2.4	2.4	2.4	2.6	2.7
울산	2.5	2.2	2.3	1.9	2.0	2.1	2.1
세종	0.0	0.0	0.0	0.0	0.0	0.4	0.5
도	45.4	48.9	45.6	46.9	48.5	50.5	49.0
경기	25.6	22.6	24.0	25.1	26.0	27.2	24.6
강원	2.1	2.1	2.3	2.1	2.2	2.5	2.5
충북	1.6	1.6	1.9	2.1	2.1	2.1	2.4
충남	3.3	3.4	3.2	3.2	3.3	3.4	3.7
전북	1.9	1.9	2.2	2.2	2.3	2.4	2.4
전남	2.3	2.0	2.2	2.8	2.8	2.8	2.9

표 3-12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시·도별 비중 추이(계속)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북	2.7	9.5	3.2	3.2	3.1	3.2	3.5
경남	4.6	4.7	5.4	5.1	5.4	5.4	5.4
제주	1.3	1.2	1.2	1.2	1.3	1.4	1.6
평균	6.3	6.3	6.2	6.3	6.3	5.9	5.9
표준편차	8.9	8.2	8.5	8.5	8.3	8.1	7.7
변이계수	1.419	1.315	1.358	1.363	1.325	1.376	1.308
최대	31.5	30.0	30.8	30.1	28.1	27.2	27.2
최소	1.3	1.2	1.2	1.2	1.3	0.4	0.5
최대/최소비	25.03	25.91	25.93	25.97	22.04	68.84	56.4

2)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 교육경비보조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8,264억원으로 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3,186억원, 교육시설 개선사업 2,129억원, 지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436억원, 교육정보화사업 46억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사업 4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 지역 간 편차는 교육시설개선(변이계수: 1.621),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1.458)에 비해 지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1.241), 지역주민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1.025) 등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3 교육경비보조금의 시·도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 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체육 문화공간 시설	기타
합계	826,408	212,911	318,594	4,635	4,367	43,575	242,326
서울	144,030	57,202	27,410	561	513	364	57,980
부산	30,008	7,514	1,522	-	145	280	20,547
대구	20,575	3,110	8,858	10	-	8,219	378
인천	64,233	3,656	36,523	1,095	246	-	22,713
광주	4,341	20	167	-	13	350	3,791
대전	5,837	2,933	231	-	3	700	1,970
울산	10,330	1,400	6,562	-	120	547	1,701



표 3-13 교육경비보조금의 시·도별 세부내역(계속)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 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체육 문화공간 시설	기타
세종	1,925	1,475	100	-	-	350	-
경기	247,919	73,025	114,985	120	438	10,299	49,052
강원	51,555	8,863	12,415	158	712	4,988	24,419
충북	13,024	3,833	7,430	120	-	660	981
충남	55,357	10,571	29,034	1,184	645	5,442	8,481
전북	22,998	2,796	8,009	172	64	5,729	6,228
전남	50,772	5,584	25,659	29	605	2,190	16,705
경북	42,519	9,072	19,516	35	161	2,012	11,723
경남	45,514	10,938	17,865	1,151	590	1,445	13,525
제주	15,471	10,919	2,308	-	112	-	2,132
평균	48,612	12,524	18,741	273	257	2,563	14,254
표준편차	61,627	20,303	27,318	437	263	3,181	16,928
변이계수	1.268	1.621	1.458	1.61	1.03	1.241	1.188
최대값	247,919	73,025	114,985	1,184	712	10,299	57,980
최소값	1,925	20	100	10	3	280	378
최대/최소비	128.8	3651.3	1149.9	118	237	36.8	153.4

- 교육경비보조금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이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교육시설개선사업이 25.8%로 이들 2개 사업이 64.4%를 점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3%, 교육정보화 0.6%, 지역주민 교육과정개발·운영 0.5% 등이다.
- 지역 간 편차는 교육정보화(변이계수: 1.557), 지역체육·문화공간사업(1.176)에 비해 교육과정운영(0.633), 교육시설개선(0.785) 등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4 교육경비보조금의 시·도별,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

구분	소계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 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체육 문화공간 시설	기타
합계	100	25.8	38.6	0.6	0.5	5.3	29.3
서울	100	39.7	19	0.4	0.4	0.3	40.3
부산	100	25	5.1	0	0.5	0.9	68.5

표 3-14 교육경비보조금의 시·도별, 항목별 세부내역(계속)

(단위 : %)

구분	소계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 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체육 문화공간 시설	기타
부산	100	25	5.1	0	0.5	0.9	68.5
대구	100	15.1	43.1	0	0	39.9	1.8
인천	100	5.7	56.9	1.7	0.4	0	35.4
광주	100	0.5	3.8	0	0.3	8.1	87.3
대전	100	50.2	4	0	0.1	12	33.8
울산	100	13.6	63.5	0	1.2	5.3	16.5
세종	100	76.6	5.2	0	0	18.2	0
경기	100	29.5	46.4	0.05	0.2	4.2	19.8
강원	100	17.2	24.1	0.3	1.4	9.7	47.4
충북	100	29.4	57	0.9	0	5.1	7.5
충남	100	19.1	52.4	2.1	1.2	9.8	15.3
전북	100	12.2	34.8	0.7	0.3	24.9	27.1
전남	100	11	50.5	0.1	1.2	4.3	32.9
경북	100	21.3	45.9	0.1	0.4	4.7	27.6
경남	100	24	39.3	2.5	1.3	3.2	29.7
제주	100	70.6	14.9	0	0.7	0	13.8
평균		27.1	33.3	0.5	0.5	8.9	29.7
표준편차		21.3	21.1	0.8	0.5	10.4	22.6
변이계수		0.785	0.633	1.557	0.91	1.18	0.763
최대값		76.6	63.5	2.5	1.4	39.9	87.3
최소값		0.5	3.8	0.1	0.1	0.3	1.8
최대/최소비		166.3	16.5	25.3	13.8	133	48.5



5.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문제점

1)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자립성) 부족

- 지방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달리 튼튼한 독립적 세원(지방세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의 자주적 수행에 근본적인 제약을 안고 있음(교육재정 자립 수준 미흡)
 - 지방교육세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수요자 대응성이 크게 부족함
- 지방교육재정의 과도한 이전재정 의존성과 매우 제한된 과세권(세금사용권한)이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교육세(국세) 전액 및 국고보조금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과 관련된 요율이나 세율의 결정권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있음
 - 지방교육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됨)의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의 과세권 행사는 매우 제한됨(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세 사용권한 보유)
 - 지방교육채 발행 또한 중앙정부(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자체수입인 수업료의 경우 교육부가 결정함
- 요약하면,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및 지방세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재원의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그것이 고유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의 자기조절 역량 면에서 근본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음

2) 지방교육재정의 경기 민감성

- 지방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로 되어 있음
 - 경기 민감성(변동성)은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재원이 내국세 및 지방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그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2년 이후 매년 약

40~41조원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줌

-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원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
 - 자원 안정성 문제는 지방교육재정의 주 재원인 중앙정부 교부금과 보조재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지원이 기본적으로 국세(내국세) 및 지방세(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발생함
 - 이는 최근 몇 년간 국세수입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타격을 입었던 경험사례가 입증해 줌
 - 그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자금액은 2012년 39.2조원, 2013년 40.8조원, 2014년 40.9조원, 2015년 39.4조원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당분간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지방교육재정의 고성장은 한 동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때, 지방교육재정이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3-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교육분야 투자계획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조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CAGR
'12~'16 국가재정운용 계획	45.5	49.1	53.2	56.7	59.9	-	-	-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계획)	38.4	41.0	45.3	49.1	53.1	-	-	-	8.4
지방교육재정교부금(투자)	39.2	40.8	40.9	39.4	41.3	-	-	-	1.4
'13~'17 국가재정운용 계획		49.8	50.8	53.2	58.1	62.1	-	-	5.7
'14~'18 국가재정운용 계획(A)			50.7	53.0	57.5	60.7	63.9	-	5.9
'15~'19 국가재정운용 계획(B)			-	52.9	53.2	54.5	56.9	59.0	2.8
차이(A-B)			-	0.1	4.3	6.2	7.0	-	3.1



3) 일반자치(일반재정)와 교육자치(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성이 높음
 - 지방자치시스템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에 칸막이식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지방재정 전체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조정이 어렵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일반자치의 경우 행정체계가 광역단체(시, 도)와 기초단체(시, 군, 구)의 분명한 위계(hierarchy) 하에 두 자치단체 수준 간의 기능과 재정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음; 이에 비해 교육자치의 경우 행정체계가 시·도 교육청의 단층체제에서 교육현장(기능)인 단위학교와 수직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
 - 이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행정체계 비대칭’을 의미함
- 이와 같이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한 행정체제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법·제도와 실제 운영 간에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상급단체의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현재의 재정체계상 개별 학교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역주민의 관점에서는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지방세의 대부분을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속하는 학교의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당연시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일반자치(일반재정)와 교육자치(교육재정)의 ‘협력적 관계 구축’, 나아가 양자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킴

4)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간에 교육비 지원규모와 수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해당지역 교육청 및 단위학교 교육수요와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한 채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교육투자(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투자의 왜곡과 함께 지출남용 가능성을 내포함
-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각 단위학교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사업의 경우 사업우선순위와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함(예: 특정 학교 앞 CCTV 설치 등)
- 전체 자원조달시스템과 지출우선순위, 단·장기 계획에 의한 자원-사업의 연계 구조가 부족한 실정임

5) 기타 문제점

- 교육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교육감은 지역주민의 선택에 의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보다는 사회·정치적 타당성(political feasibility)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음
 - 사업의 시급성이나 경제적 타당성보다 가시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예산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유사·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음(비효율성, 비효과성, 국민세금의 경제적 가치 저하 등)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이나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방과 후 학교운영 등이 그에 해당함
- 교육기관보조금의 편향적인 지원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예컨대, 영어교육에 매우 편향적인 예산배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예산보다는 명문고 육성, 수능대비 교육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 현상이 나타남
 - 특히,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지출수요가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반자치 부문은 물론 교육자치부문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 하고 있음
 -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일반복지와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주체의 협력적 재정관계가 매우 중요함
-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미약
 -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간에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함



-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시·도와 교육청 간에 협의와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특히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성과관리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음

IV. 교육경비 실태 및 사례 분석

1.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례

IV



1.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실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보조 규모 제한, 보조 사업 범위,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44개 중 170개 자치단체로 약 69.7%였다.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3/16개, 18.8%)보다 기초자치단체(167/228개, 73.2%)에서 많이 제정·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지역(47/73개, 64.4%)과 군지역(58/86개, 67.4%)에 비해 자치구(62/69개, 89.9%)에서 더 많이 제정·운영하고 있었다.

표 4-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여부

구분		전체		유		무		
광역 자치 단체	특별광역시	9	(100.0)	1	(11.1)	8	(88.9)	
	도	7	(100.0)	2	(28.6)	5	(71.4)	
	소계	16	(100.0)	3	(18.8)	13	(81.3)	
기초 자치 단체	시	시1	15	(100.0)	7	(46.7)	8	(53.3)
		시2	58	(100.0)	40	(69.0)	18	(31.0)
		소계	73	(100.0)	47	(64.4)	26	(35.6)
	군	군1	40	(100.0)	33	(82.5)	7	(17.5)
		군2	46	(100.0)	25	(54.3)	21	(45.7)
		소계	86	(100.0)	58	(67.4)	28	(32.6)
	자치구	69	(100.0)	62	(89.9)	7	(10.1)	
소계	228	(100.0)	167	(73.2)	61	(26.8)		
전체		244	(100.0)	170	(69.7)	74	(30.3)	

2)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및 8개 광역시(특별·광역시)와 8개 도지역(도)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개 유형(인구50만 이상 시지역(시1), 인구50만 미만 시지역(시2), 인구5만 이상 군지역(군1), 인구5만 미만 군지역(군2), 자치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교육투자 총액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교육투자 규모는 [표 3-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광역자치단체교육투자 규모는 총 9,658억원이었고, 기초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는 총 1조 7,21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특별·광역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이 6,322억원, 도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이 3,336억원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5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5,021억원,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에서 6,276억원, 인구5만 이상 군지역에서 1,163억원, 인구5만 미만 군지역에서 947억원, 자치구에서 3,804억원을 교육에 투자하였다.

표 4-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유형별)

(단위: 자치단체 수, 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수	교육경비 보조금액	비법정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
광역 자치 단체	특별광역시	9	16,110	616,068	632,178
	도	8	1,272	332,338	333,610
	소계	17	17,381	948,406	965,787
기초 자치 단체	시1	15	210,980	291,135	502,116
	시2	60	249,335	378,237	627,572
	군1	28	35,332	80,934	116,266
	군2	53	20,960	73,719	94,679
	자치구	70	176,014	204,368	380,382
	소계	226	692,622	1,028,393	1,721,015
총계		243	710,003	1,976,799	2,686,802



- 교육투자액을 지난 2010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교육투자비는 2010년 1조 5,935억원에서 2020년 2조 6,868억원으로 연평균 약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액의 경우에는 7,763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연평균 약 0.99%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2010년과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비교(유형별)

(단위: 자치단체 수, 백만원)

구분		2010년			2020년		
		교육경비 보조금액	비법정 이전수입	지방자치 단체교육 투자 총액	교육경비 보조금액	비법정 이전수입	지방자치 단체교육 투자 총액
광역 자치 단체	특별광역	9,938	133,080	143,018	16,110	616,068	632,178
	도	9,750	53,231	62,981	1,272	332,338	333,610
	소계	19,688	186,312	206,000	17,381	948,406	965,787
기초 자치 단체	시1	227,311	21,191	248,502	210,980	291,135	502,116
	시2	226,004	76,636	302,640	249,335	378,237	627,572
	군1	70,513	60,080	130,593	35,332	80,934	116,266
	군2	38,618	37,759	76,377	20,960	73,719	94,679
	자치구	154,820	62,595	217,414	176,014	204,368	380,382
	소계	756,642	630,884	1,387,525	692,622	1,028,393	1,721,015
합계		776,330	817,196	1,593,525	710,003	1,976,799	2,686,802

(2) 지방자치단체별 교육투자 총액

-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12.6%로 전국 평균인 26.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4 시·도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단위: 자치단체 수, 백만원, %)

구분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총액 (C=A+B)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서울	152,036	29.7%	359,629	70.3%	511,666
세종	120	0.8%	15,683	99.2%	15,803

표 4-4 시·도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계속)

(단위: 자치단체 수, 백만원, %)

구분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총액 (C=A+B)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부산	10,422	12.8%	71,033	87.2%	81,455
대구	7,364	9.3%	72,206	90.7%	79,570
인천	17,930	12.6%	124,600	87.4%	142,530
광주	357	0.6%	55,306	99.4%	55,663
대전	2,891	4.4%	62,408	95.6%	65,299
울산	4,516	11.1%	36,138	88.9%	40,654
경기	388,000	42.0%	535,113	58.0%	923,114
강원	9,726	9.4%	93,466	90.6%	103,192
충북	3,573	5.5%	61,557	94.5%	65,130
충남	16,950	13.3%	110,658	86.7%	127,607
전북	6,755	8.5%	72,385	91.5%	79,141
전남	35,187	27.0%	94,957	73.0%	130,144
경북	23,363	24.3%	72,765	75.7%	96,128
경남	27,033	20.2%	106,920	79.8%	133,953
제주	3,781	10.6%	31,976	89.4%	35,757
합계	710,003	26.4%	1,976,799	73.6%	2,686,802

-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비법정이전수입의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로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었다.

표 4-5 광역·기초자치단체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단위: 자치단체 수, 백만원, %)

구분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총액 (C=A+B)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광역	17,381	1.8%	948,406	98.2%	965,787
기초	692,622	40.2%	1,028,393	59.8%	1,721,015
합계	710,003	26.4%	1,976,799	73.6%	2,686,802



(3) 인천광역시 교육투자 총액

-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10개의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와 동구,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교육투자총액(C=A+B)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인천시(광역시)	-	0.0%	86,985	100.0%	86,985
강화군	2,452	78.6%	668	21.4%	3,120
계양구	1,423	27.8%	3,686	72.2%	5,109
서구	2,542	25.0%	7,639	75.0%	10,181
부평구	1,270	19.4%	5,275	80.6%	6,545
남동구	2,363	26.7%	6,480	73.3%	8,844
연수구	3,929	38.4%	6,295	61.6%	10,223
미추홀구	2,534	41.7%	3,546	58.3%	6,080
동구	-	0.0%	647	100.0%	647
중구	1,418	34.0%	2,752	66.0%	4,170
옹진군	-	0.0%	626	100.0%	626
합계	17,930	12.6%	124,600	87.4%	142,530

- 인천광역시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22.8%에서 2020년 26.5%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총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옹진군과 동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왔다.

표 4-7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최근 3년 교육경비 보조금 비중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천시(광역시)	0.0%	0.0%	0.0%
강화군	74.3%	69.1%	78.6%
계양구	20.3%	22.7%	27.8%
서구	24.4%	24.4%	25.0%
부평구	9.7%	11.2%	19.4%
남동구	20.4%	15.8%	26.7%

표 4-7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최근 3년 교육경비 보조금 비중 규모(계속)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수구	31.5%	41.0%	38.4%
미추홀구	32.7%	33.3%	41.7%
동구	0.0%	0.0%	0.0%
중구	37.2%	24.5%	34.0%
옹진군	0.0%	0.0%	0.0%
평균	22.8%	22.0%	26.5%

- 인천광역시 내의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관련 조례 분석 결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의 기준액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옹진군의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표 4-8 인천광역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

구분	근거 법령	보조 기준액
인천시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세의 1% 이상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7% 이내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이내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자체세입액의 0.5% 이상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이내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 이내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 예산액의 4.1% 이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근거 법령	보조 기준액
미추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 예산액의 4% 이내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의 교부금·교부세에 따른 사업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 이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이내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의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비·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2018년~2020년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내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총액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의 비중 분석 결과, 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총액 중 평균 0.39%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2018~202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경비	예산총액 대비	교육경비	예산총액 대비	교육경비	예산총액 대비
인천시(광역)	-	0.00%	-	0.00%	-	0.00%
강화군	2,377	0.54%	2,513	0.50%	2,452	0.44%
계양구	1,339	0.32%	1,440	0.31%	1,423	0.24%
서구	3,614	0.48%	4,688	0.52%	2,542	0.28%
부평구	855	0.12%	1,156	0.14%	1,270	0.14%
남동구	2,068	0.28%	2,486	0.31%	2,363	0.27%
연수구	3,269	0.64%	5,573	0.96%	3,929	0.66%
미추홀구	2,438	0.42%	2,847	0.44%	2,534	0.34%
동구	-	0.00%	-	0.00%	-	0.00%
중구	1,796	0.54%	1,709	0.45%	1,418	0.36%
옹진군	-	0.00%	-	0.00%	-	0.00%
합계/평균	17,755	0.09%	22,412	0.10%	17,930	0.08%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례

1) 광역자치단체 사례

(1) 서울특별시

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례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였다.
- 지원내용 : 26개 사업 54,376백만원
 -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 : 24개 사업 36,451백만원
 - 특별교육경비 포괄예산 : 5,437백만원
 - 입학지원금 : 12,488백만원

나. 사업별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10 서울특별시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 추진내용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예산	
일반교육경비보조사업	학습준비물비 지원	공립초 562개교 384천명	학생 1인당 연 13천원(가위, 테이프, 고무줄 등) 지원	4,992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공립초등학교 36개교	공립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및 활용 지원	1,512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3~6학년 및 자유학기제 시행중인 중학교 1~2학년 사회배려 계층 학생	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지원	600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80개교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외창의도시 탐방,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등	600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22개 공공도서관	혁신모델도서관, 도서관 대학, 창의학습공간 지원	350



표 4-10 서울특별시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 추진내용(계속)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예산	
일반 교육 경비 보조 사업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초·중·고 226개교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등	1,344
	마을결합중점학교	마을결합중점학교 65개교	학교-마을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	1,000
	유아교육 지원	에듀케어 유치원 80개원, 온종일 돌봄 유치원 6개원	인건비 보조, 교사 상주 등 지원	610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중 200개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의 돌봄 보조인력 지원	1,000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초·중·고 140개교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4,075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특수·유·초·중·고 12개교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 및 천정, 바닥, 출입문, 도장 등 리모델링 예산 지원	3,700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초·중·고 7개교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구축, 창작공간 지원 및 교육 운영	1,000
	학교 CCTV 교체 지원	250개교	카메라(200만화소 이상)+모니터+DVR+자재비 등	1,535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고입초 8개교	학생 참여형 놀이터 구축 사업비 지원	1,200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유치원 임시 수용에 소요되는 임차료 지원	550
	학교체육관건립	6개교	지역 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600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공립학교 전체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 시설 보수비 지원	2,100
	미래형 교실 조성	초·중·고 20개교	학교무선망 설치 및 스마트패드 등 지원	940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활동 특별교실 구축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초등학교 중 18개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습실 구축	720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특수·유·초·중·고 100개교	고온다습한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조리 기구 교체	1,000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 진흥 캠페인	초·중·고 100개교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독서캠페인,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교육, 교내 스포츠 라이브러리 구축	500
	서울나래학교 복합시설 설치	서울나래학교	서울나래학교 내 학생·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1,000
	마을결합형 학교공간 시설개선 지원	오류중학교	학교 내 방과후 활동 평생학습 공간 조성	800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사업	공·사립 유·초·중·고 전체 학교	자치구별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4,723

다.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4.5% 수준이며, 연평균 10.8%씩 증가하고 있다.

표 4-11 양천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단위: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CAGR)
교육경비 보조금	금액	9,949,906,210	11,316,558,340	12,208,707,048	10.8
	비중	4.8%	4.2%	4.5%	
지방자치 단체교육 투자 총액		206,889,914,195	267,172,481,904	268,941,217,414	14.0

라.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본계획에는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자원 등)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60이내에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를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자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표 4-1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7.9.21>



표 4-1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계속)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17.9.2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0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19, 2017.9.21>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19, 2017.9.21>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1>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7.9.21>

2) 기초자치단체 사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례

- 서울시 양천구는 2021년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154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학교·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인문학아카데미, 스포츠 활동, 자유 학년제 연계 진로캠프 등) 지원 60억’,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 88억 원’, ‘중1·고1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6억 원’ 등이다.

- 양천구는 효율적인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장·유치원장을 대상으로 ‘2021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면·비대면 융합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로봇코딩, AI 교육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나.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양천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55%수준이며,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다.

표 4-13 양천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단위: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CAGR)
교육경비 보조금	금액	7,346,792,690	7,609,481,220	7,539,855,690	1.3
	비중	55.7%	52.4%	55.8%	
지방자치 단체 교육 투자 총액		13,194,456,770	14,515,817,850	13,517,802,830	1.2

다. 양천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

경개선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또한, 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8퍼센트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 다만,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구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교육경비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4-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09.12.24>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19. 9.20>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9.20>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8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구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교육경비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9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7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27억원을 지원하였다.
 - 울주군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별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액을 확정하였다.

- 지원내용으로는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방과 후 교실 강사비,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교육, 급식시설 개선, 도서관 및 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비 등이다.
- 또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 울산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 지원체계를 갖췄다.

나.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울주군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28.4%수준이며, 2018년과 2019년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중은 30%를 넘는 수준이다.

표 4-15 울주군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단위: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CAGR)
교육경비 보조금	금액	2,382,663,120	2,502,921,800	2,332,365,440	-1.1
	비중	35.7%	32.2%	17.3%	
지방자치 단체 교육 투자 총액		6,678,560,990	7,782,489,250	13,517,802,830	42.3

다. 울주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사업,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 또한, 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에서는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실제수납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록 규정하고 있다.

■ 표 4-1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사업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실제수납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례

- 서울시 동대문구는 2021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와 관련된 미래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한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0개의 초·중·고교에 1억 2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4개의 학교에는 가상현실(VR), 자율주행 로봇, 3D프린터 등 미래과학 교육 시설이 지원되며,
 - 6개 초등학교에는 스마트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태블릿 PC 등을 지원하였다.

나.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 동대문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67%수준이다.

표 4-17 동대문구의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추이

(단위: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CAGR)
교육경비 보조금	금액	6,065,502,418	7,131,025,300	5,996,139,986	-0.6
	비중	68.8%	66.7%	65.4%	
지방자치 단체 교육 투자 총액		8,813,311,248	10,697,832,790	9,165,485,522	2.0

다. 동대문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동대문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각급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각급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또한, 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는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3의2. 각급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표 4-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계속)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용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분석

1) 용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²⁾

-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과거 용진군의 ‘용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음
 - 조례 제1조(목적)에서는 용진군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경우에는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표 4-19 용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의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그러나 2010년 9월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 본 결과,
 - 제3조(범위)와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근거로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제5조(보조금의 지원 규모)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2009년 8월 3일 폐지 : 용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 부칙에 의거 폐지



표 4-20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내용)

제3조(범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2. 학교급식 지원 사업
3. 외국어 교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비·시비(군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과 교육 시설·환경 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도시 지역 견학 등의 체험학습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4. 자체자원 지원 사례 분석

1) 강릉시·영월군·평택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2016년 강릉시는 보육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 강릉시의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자 자체 예산을 통해 163개 어린이집의 2,700여명(3~5세)의 누리과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약 100억 1,207만원을 지원하였다.
- 같은 해 강원도 영월군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군비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10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에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다.
- 그 외에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강원도 횡성군 등도 해당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자 자체 예산의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4-21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지자체

(단위: 억원)

구분	수원시	평택시	안산시	안성시	강릉시	횡성군	영월군
금액	159	102	260	93	100	17	10

2) 교육재정 지원 관련 법령 분석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 강릉시와 영월군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 국가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표 4-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내용)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V. 용진군 교육경비 지원 방안 마련

1.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2.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3.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의 활용





1.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2016년도에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과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웅진군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사례>

- ▶ 2016년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법제처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음

<법제처 의견>

-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양군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총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총당하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집행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조례 제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양군조례안의 내용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영양군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3조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금의 지원을 군수의 재량에 맡기면서 법령과 예산의 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영양군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영양군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영양군조례안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략-

- 따라서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총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총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한 결과,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총당하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집행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조례 제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옹진군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범위)에 대하여 제4조(사업)에서는 ‘군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금의 지원을 군수의 재량에 맡기면서 법령과 예산의 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옹진군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옹진군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옹진군조례안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옹진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구·군과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공동 개발 등 연계와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서울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울지역 7개 자치구와 서울형혁신교육 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예산은 서울시 및 교육청이 각각 7억 5천만원, 자치구 5억원 등 자치구마다 20억원을 확보하고, 운영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자치구 특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와 같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지역 자치구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할 때 학교 혁신과 나아가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도 지역 및 구·군 간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교육청과 자치구·군의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의 활용

1) 비법정전입금 개요

-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입금 외 별도로 지원하는 경비이다.
-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비법정전입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재원이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법정전입금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경비이다.
-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경비, 학교급식, 유아무상교육비, 영재 및 특수교육 지원, 국민체육진흥 등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2) 비법정전입금 활용 근거 및 내용

(1)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기타 교육·학예 지원 관련 법률

- 공공도서관 및 학교급식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영재교육, 국민체육 등 다양한 교육·학예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4) 비법정전입금 유형별 주요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비법정전입금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급식, 원어민강사, 체육활동, 외국어교육, 유아교육, 시설지원, 교육환경 개선, 도서관 운영, 학력향상, 보육, 교육복지, 영재교육, 특수교육 등 약 16개의 사업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1 비법정전입금 유형별 사업내용

시설유형	사업내용
시설지원	• 잔디운동장 조성, 학교 복합화 시설, 다목적강당 증·개축 사업, 다목적실 증축, 학생수영장 보수, 테니스장 설치, 기숙사 증축, 생활관 증축 등
급식지원	• 학교급식소 증·개축, 급식실 설비개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급식소 리모델링,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우수농산물지원, 무상급식, 급식비, 친환경쌀과 부식비 등 지원
원어민강사 지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수 지원, 원어민 중국어 강사 지원 등
방과후 학교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외계층 자유수강권,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도서관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 운영비,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디지털자료실 운영비 등
교육환경 개선	• 교단선진화, 학교 시설개설과 교육시설환경 개선, 노후창호교체, 노후TV교체 등
외국어교육지원	• 영어 중심 학교, 초중등영어교사 연수,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영어체험교육실 운영비, 영어캠프 운영, 어학연수 지원, 외국어센터 운영 등
보육지원	• 초등 돌봄교실 운영,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보육교실 구축 등
체육활동지원	• 운동부 운영비, 소년체육대회 출전, 체육지도자 인건비, 체육꿈나무 육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학력향상지원	• 학력향상,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기초·기본 학력신장, 초중등 주말반 운영, 온라인 학습, 학력 제고비, 야간공부방 운영, 맞춤형 수월성 교육, 대학생 멘토링, 교육학력지원단 운영비 보조금 등
교육복지 투자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 지원, 자체교육복지지원금, 저소득층자녀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다문화가정 두레 상담교실 운영, 학생복지관 건립
유아교육지원	•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와 운영비, 과학캠프 운영, 교재교구 구입비, 간식비 등 지원

시설유형	사업내용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통합보조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등 지원
인재육성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품학교 운영, 지역인재 육성, 우수교사 유치와 생활보조금 운영비, 장학기금 등 지원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경기대회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문화예술 교육,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통학차량, 배움터지킴이 사업 보조금, 좋은학교 만들기,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

- 발행일 2021년 11월
 - 발행인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 장 이 행 숙
 - ▷ 전 화 : 032) 441-2511~3
 - ▷ 홈페이지 : <http://www.kapi.re.kr>
-

【비매품】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웅진군의회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